

발의안 제2호

2013-2014 이차 임시 회기의 입법부 헌법 수정안 1(2013-2014 2차 임시 회기, 결의안 1장)에 의해 제안된 본 수정안에서는 California 주 헌법에 속한 항들을 추가하고 폐지하므로 명백히 California 주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으로 인쇄하고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신규 조항은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IV조 및 XVI조에 대해 제안된 수정안

첫째-12.5항을 다음과 같이 IV조에 추가한다.

12.5 항. 12항의 (a)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후, 정부법 13308항의 (e) 또는 후속 법령에 규정된 정부 예산 수정 제안 후, 그리고 예산법 집행 후 10일 이내, 또는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 국장은 주의회에 다음의 두 문건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a) 다음 회계연도 및 이후 세 번의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기금 수익 추정액.

(b) 다음 회계연도 및 이후 세 번의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기금 지출 추정액.

두 번째—XVI조의 20항을 폐지한다.

20 항. (a) 예산 안정화 계정이 일반 기금에 신설된다.

(b) 조항 (1)-(3)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회계연도에 회계감사원장은 일반 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다음 금액을 이월해야 한다.

(1) 2006년 9월 30일까지, 2006-07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익 추정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총액.

(2) 2007년 9월 30일까지, 2007-08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익 추정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총액.

(3) 2008년 9월 30일까지, 현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익 추정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총액.

(c) 기금은 해당 계정의 최종 잔고가 집행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법에 규정된 일반 기금 수익 추정액의 5퍼센트 또는 팔십억 달러 (\$8,000,000,00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특정 회계연도의 경우 (b)에 따라 이월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회는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원장에게 다음 조항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 본 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라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된 기금은 본 헌법의 모든 취지에서 일반 기금 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

(e) 일반 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의 기금 이월은 이전 회계연도의 6월 1일까지 주지사가 발행한 집행 명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f) (1) 각 회계연도에 이월된 기금 가운데, 전체 회계연도의 50 퍼센트, 즉 총 오십억 달러(\$5,000,000,000)까지 적자 회복 채권에 예치해야 한다. 이로써 기금상환 감채 기금 하위 계정은, 1.3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승인되어 발행된 적자 회복 채권 및 법률에 따라 이러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제시된 기타 지불 금액의 상환을 위해 해당 계정에 신설된다. 감채 기금 하위 계정의 기금은 재무국장으로 전용되어 재무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시간 및 방식으로 해당 취지에 맞게 지출된다. 적자 회복 채권 전체를 상환한 후에는

감채 기금 하위 계정에 남아 있는 기금을 해당 계정으로 이월해야 하며, (2)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2)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으로 이월된 기타 모든 기금은 감채 기금 하위 계정에 예치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세 번째—20항을 다음과 같이 XVI조에 추가한다.

20 항. (a) (1) 예산 안정화 계정이 일반 기금에 신설된다.

(2) 2015-16 회계연도 및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법을 기준으로, 회계감사원장은 10월 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익 추정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총액을 일반 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해야 한다.

(b) (1) 2015-16 회계연도 및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법을 기준으로, 재무부는 주의회에 다음의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A)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XIII B조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 추정액.

(B) (i) (A)에 규정된 순개인 자본 이익에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에 따른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 일정 부분에 대한 추정액.

(ii) (i)에서 (A)에 따른 추정액의 8퍼센트를 초과하는 추정액의 일정 부분.

(C) (B)(ii)에 따라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됨에 따라 8항의 주 기금의 일반 채권 부분.

(D) (c)에서, (1)(B) 또는 (2)(C)(ii)에 기술된 것으로, 본 조항의 (B) (ii)에서 설명한 수입에서 지출한 금액.

(E) (B)(ii)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C) 및 (D)에 따라 산출한 합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결과가 제로 미만인 경우, 금액은 이러한 목적상 제로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F) 예산 안정화 계정의 잔고가 (e)의 한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로 (E)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이월 금액 중 적은 금액.

(2) 2015-16 회계연도만 감안할 경우, 2016-17 회계연도 및 2017-18 회계연도 및 이후 각 회계연도를 각각 다음 두 차례의 이전 회계연도와 별도로 연관지어 감안했을 때, 재무부는 해당 회계연도에 적용된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의 전체 항목을 산출하고 결과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A) XIII B조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에 대한 최근 추정액.

(B) (i) (A)에 규정된 순개인 자본 이익에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에 따른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 일정 부분에 대한 최근 추정액.

(ii) (i)에서 (A)에 따른 최근 추정액의 8퍼센트를 초과하는 최근 추정액의 일정 부분.

(C) (B)(ii)에 따라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으로 산정된 최근 금액이 포함됨에 따라 8항의 주 기금의 일반 채권 부분의 최근 산정액.

(D) (c)의 (1)(B), 또는 (2)(C)(ii)에 기술된 것으로, (1)(B)(ii)에서 설명한 수입에서 지출한 금액.

(E) (B)(ii)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C) 및 (D)에 따라 산출한 합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결과가 제로 미만인 경우, 금액은 이러한 목적상 제로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F) (c) 및 (d)에 따라 회계감사원장이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일반 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앞서 이월한 금액.

(G) (E)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주의회가 앞서 승인한 22항 (a)(1)에 따른 이월 중지 또는 감액된 값을 차감한

결과 제로 이상인 금액과 (F)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계감사원장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이전에 이월한 금액 또는 (ii) 이월로 예산안정화 계정의 잔고가 (e)에 규정된 한도에 도달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

(c) (1) (A) 2015-16 회계연도 및 이후 2029-30 회계연도에 이르는 각 회계연도의 10월 1일까지, (b)(2) 및 (3)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 규정된 추정액 및 (a)(2)에 명시된 총액을 기준으로, 회계감사원장은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무이사가 수립한 조항에 따라, 일반 기금 및 예산안정화 계정의 금액을 이월해야 한다.

(B)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A)에 명시된 예산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경우

(i) (a)(2)에 명시된 금액과 (b)(1)(B)(ii)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b)(1)(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모두에 대한 오십 퍼센트를 일반 기금에서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해야 한다.

(ii) 나머지 50퍼센트는 주의회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의무 및 목적으로 전용하도록 한다.

(I) 2014년 7월 1일 당시의 8항에 따라 일시 차입금의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의무.

(II) 2014년 1월 1일 당시의 미지불 잔고가 있었던, 일반 기금 이외의 기금에서 일반 기금에 예산 대출.

(III) 아직 미지불 상태이고, XIII B 조 6항의 (b)(2)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 지불이 허용된, 2004-05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의무 비용에 대한 지불 청구.

(IV) 주 차원의 연금 제도에 대한 일시 차입금 및 기타 퇴직후 급여의 프리펀딩, 해당 회계연도에 규정된 것으로, 다른 상황이었다면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되었을 현재 기준 금액을 초과. 본 하위 조항의 목적상, 현재 기준 금액은 법률, 승인된 양해각서, 단체교섭에서 배제 또는 제외된 피고용인에 대한 기부금 산정을 수립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고용주 또는 단체가 수립한 급여 조항, 또는 상기를 조합한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본 하위 조항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지출금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해당 회계연도 또는 이후 회계연도에서 본 하위 조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불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는 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A) 2030-31 회계연도 및 이후 각 회계연도의 10월 1일까지, (b)(2) 및 (3)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 규정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회계감사원장은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 감독관이 수립한 조항에 따라, 일반 기금을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해야 한다.

(B) (A)에 기술된 예산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경우, (a)(2)에 명시된 금액 및 (b)(1)(B)(ii)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b)(1)(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모두 일반 기금에서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해야 한다.

(C)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a)(2)에 명시된 금액과 (b)(1)(B)(ii)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b)(1)(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결과의 금액 모두의 50퍼센트를 (1)(B)(ii)에 기술된 한 가지 이상의 의무사항 및 목적을 위해 전용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기술된 이월액은 22항의 (a)(1)에 따라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다.

(d) 2016-17 회계연도 및 이후 각 회계연도의 10월 1일까지, (b)(4) 및 (5)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 규정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회계감사원장은 다음과 같이, 재무이사가 수립한 조항에 따라, 일반 기금과 예산안정화 계정 사이에서 금액을 이월해야 한다.

(1) (b)(2)(G)의 금액이 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하고, 22항의 (a)(1)에 따라 해당 이월액에 대한 중지 또는 감액을 적용한다.

(2) (b)(2)(F)에 규정된 금액이 (b)(2)(E)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예산안정화 계정에서 일반 기금으로 다시 이월한다.

(e)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a)(2) 및 (c), (d)에 따라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된 금액은 계정 내 잔고가 이월 시 (b)에 따라 산출한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연도에서,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단, 이 조항에서는 예산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되었을 수 있는)은 이연 유지를 포함,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법의 13101 항에 정의된 인프라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f) (b)에서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으로 기술된 금액은 해당 수입이 발생한 회계연도에서 8항의 목적에 따른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으로, 이후 이러한 기금이 예산안정화 계정에서 일반 기금으로 이월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으로는 볼 수 없다.

(g) 회계감사원장은 예산안정화 계정에서 현재 본 항의 목적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을 일반 기금의 일일 현금 흐름 필요성을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특정 용도는 예산안정화 계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h) 연간 예산법에는 다음의 전체 항목에 기술된 추정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a)(2).
- (2) (b)(1)(B)(ii).
- (3) (b)(1)(F).
- (4) (b)(2)(B)(ii).
- (5) (b)(2)(G).

네 번째—21항을 다음과 같이 XVI조에 추가한다.

21 항. (a)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이 일반 기금에 신설된다.

(b) 2015-16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의 10월 1일까지, 20항의 (b)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감사원장은 재무이사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 기금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해당 금액을 이월해야 한다.

(1) (A) 2015-16 회계연도 및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20항의 (b)(1)(C)에 명시된 양수의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해야 하며, 그 금액은 (B)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본 항의 기타 조항 또는 22항의 (a)(3)에 따라 해당 이월액에 대한 감액 또는 중지를 적용한다.

(B) 재무이사는 20항의 (b)(1)(C)에 명시된 양수의 금액과, 8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원을 위해 주에서 운용해야 하는 기타 모든 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XIII B 조에 따라 전용된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을 통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 배정 금액과 이전 회계연도에 배정된 지방의 세금

2

수입, 이전 회계연도의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의 모든 배정 금액 마이너스, 이전 회계연도에 본 항에 따라 공급 학교 시스템 안정 계정으로 이월된 금액 및 평균 일일 출석률의 비율 변화와 XIII B조 8항의 (e)(1)에 따른 생계비 변화 또는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일반 배정 시 적용된 생계비 조정 중보다 큰 수치를 감안한 8.5항의 (a)에 따라 배정된 수익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2) (A) 2016-17 회계연도부터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회계감사원장이 이전 회계연도에서 일반 기금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서 20항 (b)(2)(C)에 따라 산출한 모든 양수의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은 (B)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본 항의 기타 조항 또는 22항의 (a)(3)에 따른 이월액의 감액 또는 중지를 적용한다.

(B) 재무이사는 20항의 (b)(2)(C)에 명시된 양수의 금액과, 8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원을 위해 주에서 운용해야 하는 기타 모든 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XIII B 조에 따라 전용된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을 통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 배정 금액과 전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지방의 세금 수입 플러스 전년 회계연도의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의 모든 배정 금액 마이너스 전년 회계연도에 본 항에 따라 공급 학교 시스템 안정 계정으로 이월된 금액 및 평균 일일 출석률의 비율 변화와 XIII B조 8항의 (e)(1)에 따른 생계비 변화 또는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일반 배정 시 적용된 생계비 조정 중보다 큰 수치를 감안한 8.5항의 (a)에 따라 배정된 수익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c) 2016-17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20항 (b)(2)(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에 회계감사원장이 일반 기금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한 금액 미만인 경우, 이러한 차액은 주에서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에서 전용 및 배정하도록 한다.

(d) 본 항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에서 (b)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된 금액은 8항 (b)(1)에 따라 산출한 주 지원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8항 (b)(2)에 따라 산출한 주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항 (b)(1)에 따라 산출한 주 지원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8항 (b)(2)에 따라 산출한 주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서 (b)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어떠한 금액도 이월할 수 없다.

(e) 본 항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8항 (d)에 따라 관리 요인을 검토하는 회계연도의 경우 (b)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어떠한 금액도 이월할 수 없다.

(f) 본 항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4-15 회계연도 이전의 회계연도에서 8항 (d)와 (e)에 따라 검토한 관리 요소를 완전히 배정할 때까지 (b)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어떠한 금액도 이월할 수 없다. 이월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법에 따라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부터 수행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회계연도에서 이월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원을 위해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에서 이월 금액을 전용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법에 따라 해당 조건은 충족되지 않으나 이후 현재 또는 이전 회계연도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 연도의 경우 이월할 수 없다.

(g) 본 항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8항 (b)의 조항이 8항 (b)에 따라 중지된 회계연도의 경우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어떠한 금액도 이월할 수 없다.

(h) 본 항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b)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된 금액은 계정의 잔고가 XIII B조에 따라 전용된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 및 8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서 배정된 지방 세금 수입에서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정된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단 본 조항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되었을 수 있음)은 주에서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운용하도록 한다.

(i) 8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원을 위해 주에서 운용해야 하는 금액이, XIII B조에 따라 전용된 일반 기금의 세금 수입을 통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 배정 금액과 전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지방의 세금 수입 플러스 전년 회계연도에 대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의 모든 배정 금액 마이너스 전년 회계연도에 본 항에 따라 공급 학교 시스템 안정 계정으로 이월된 금액 및 평균 일일 출석률의 비율 변화와 XIII B조 8항의 (e)(1)에 따른 생계비 변화 또는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일반 배정 시 적용된 생계비 조정 중보다 큰 수치를 감안한 8.5항의 (a)에 따라 배정된 수익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은 주에서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에서 전용 및 배정하도록 한다.

(j)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에서 이월된 기금은 8항의 목적상, 해당 계정에서 기금이 전용된 회계연도가 아니라, 이월이 이루어진 해당 회계연도에 주에서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규정해야 한다.

(k)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8항과 8.5항에 따라 주에서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운용해야 하는 기금의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l) 회계감사원장은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에서 현재 본 항의 목적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을 일반 기금의 일일 현금 흐름 필요성을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회계감사원장에 의한 기금의 특정 용도는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22항을 XVI조에 추가한다.

22 항. (a) 예산 긴급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긴급성을 구성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주지사의 성명 후, 주의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

(1) 20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기금을 이월하는 한 회계연도에서, 규정된 달러 금액 만큼 이월을 중지하거나 감액.

(2) (A) 예산 긴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용 목적으로 일반 기금에 이월되었거나 20항에 따라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되었던 기금을 반환.

(B) 예산 안정화 계정 잔고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 기금으로 반환하여 특정 회계연도에서 (A)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 단, 예산 안정화 계정의 기금이 바로 이전 회계연도 전용을 위해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한다.

(3) 2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기금을 이월하는 한 회계연도에서, 규정 달러 금액 만큼 이월을 중지하거나 감액.

(4) 21항에 따라 공립 학교 시스템 안정화 계정으로 이월된 기금을 전용하고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금을 배정한다.

(b) 본 항의 목적상, "예산 긴급성"은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1) XIII B조 3항의 (c)(2)의 의미 내에서, 주지사가 확인한 긴급 사항.

(2) (A)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감안한 최근의 3개 예산법 집행 당시 산출한 일반 기금의 최고 지출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예비비의 기금을 제외하고, 추정액만으로는 현재 또는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주지사의 결정.

(i) California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 결과, 주의 생계비 연간 비율 변화.

(ii) 정부법 7901항의 (b)에 따라 주의 주민수 연간 증가 비율.

(B)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 긴급성으로 인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회계연도의 총 일반 기금 지출 수준에서, (A)에 따라 산출된 바와 같이, 최근의 세 개 예산법 집행 당시 총 일반 기금 지출 추정액의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a)(2)(B)에 따라 규정된 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발의안 제45호

California주 헌법 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보험법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보험료 공적 정당화 및 책임에 관한 법

1항. 결과 및 목적.

California의 건강 보험, 주택 보험 및 자동차 보험은 경제적 필요성 또는 법의 효력에 따라 California 주민에게 의무 사항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적절한 보험료, 이용 가능성 및 경쟁력 및 공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본 법안의 목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건강 보험, 주택 보험 및 자동차 보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위증 형벌 조건에 따라, 건강 보험 회사가 보험료 적용 전 보험료를 공개하고 설명하도록 규정, (2) 사전 보험 적용 및 크레딧 이력을 토대로 건강, 자동차 및 주택 보험에 대한 불공정 가격 책정 금지 및 (3) 건강 보험 회사가 이러한 법안에 따른 세금 납부자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신규 법안의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

2 항. 보험료의 공개 조사 및 검토.

1861.17항이 다음과 같이 보험법에 추가된다.

1861.17. (a) 1861.03항 및 1861.04-1861.14항을 포괄하여 (a)와 (b)는 보건 및 안전법, 및 기타 법조항의 1851항 및 10181항-10181.13항, 1385.01항-1385.13항의 (e)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에 적용해야 한다. 2012년 11월 6일 이후 제안된 건강 보험료는 적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2년 11월 6일 발효된 건강 보험료는 본 항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 건강 보험료 적용 시, 위증 형벌 조건에 따라,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California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함을 확인하는 보험회사 최고 책임자의 선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b) 과도 기간 중 감독관은 조건부 및 (c)의 환불 규정에 따라, (1) 보험료 시행 날짜가 2014년 1월 1일이고, (2) 신규 건강 보험료가 이전에 California에서 상품화된 이력이 없고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 연방법, 주립법의 의무 조항을 포함한 경우, 1861.05항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던 신규 건강 보험료를 허가할 수 없다.

(c) 1861.03항 또는 1861.05항에 따른 기록을 포함하여, 1861.10항 (a)의 권한에 따른 이전 기록에서, 보험 회사가 너무 과도한 건강 보험료를 부과했거나 본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처벌 외에도, 기타 법 조항에 관계없이, 이자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d) 건강, 자동차 및 주택소유자 보험과 관련하여, 이전 보험 보상이나 개인의 크레딧 이력이 없는 경우, 약관 또는 계약에 대한 적격성 또는 보험료 또는 보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e) 기타 법률 조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은 1385.01항 및 다음의 보건안전법에 따라 보건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보험료 검토 권한 전체를 포함하여, 본 항의 조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다.

(f) 건강 보험 회사는 12979항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법의 13340항에 관계없이, 본 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영 또는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용된다. 감독관은 일반 대중에게 모든 해당 지출 내역 및 본 항의 영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g) 본 항의 목적상,

(1) "건강 보험"은 (A) 106항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B) 보건안전법의 1345항 (f)에 규정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따라 California에 수립되어 이행되는 정책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2) "보험료"는 건강 보험에 산정된 수수료 또는 건강 보험과 관련한 수수료를 감안한 비용으로, 보험 가입자의 수익금, 기본 보험료, 언더라이팅 상대, 할인, 공동 지불, 공동 보험, 공제 금액, 보험료 대출 금융, 할부 수수료 및 기타 현금 지출 경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 다음은 본 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안전법의 10181항 (a) 또는 1385.01항 (a)에 규정된 대규모 그룹 건강 보험 정책 또는 계약, 또는 보건안전법의 10181.2항 또는 1385.02항에 따라 제외되는 정책 또는 계약으로, 이러한 조항은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3 항. 기술 문제.

본 법안은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편견 없이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며, 법안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 의회의 의사록 등재자 호명 투표에서 구성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할 경우, 또는 선거민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효되는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본 법안의 조항 또는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안의 나머지 조항이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고, 무효 또는 집행 불가 조항이나 적용 없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2

45

발의안 제46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California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하고, 민법(Civil Code)에 새 조항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유형으로 인쇄되고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발의 법안

2014년 트로이와 알라나 팩의 환자안전법
(Troy and Alana Pack Patient Safety Act)

제1항 제목.

본 법안은 2014년 트로이와 알라나 팩의 환자안전법(Troy and Alana Pack Patient Safety Act)으로 알려져 있다.

제 2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1.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California의 경우 의사에 의한 약물 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환자의 수도 해마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작년, California 의료국(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보고에 따르면 자격이 정지된 의사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의사 장애 사례(physician impairment cases)에서 관측된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3. 조사 결과 의사 열 명 가운데 최소 한 명이 직무 중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학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의 기사에 따르면, 의사의 삼분의 일이 직무 중 때때로,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등의 상태를 경험하며, 이는 안전한 치료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파일럿, 버스 운전 기사 및 안전과 밀접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것과 같은, 의무적인 약물 및 알코올 검사 규정이 없으며,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의사의 치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4. 직무 중 약물과 알코올로 치료 능력을 상실한 의사의 경우 환자 및 크게는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미국 의학협회(AMA) 저널에 인용된 한 추산에 따르면, 병원 전체 입원 환자의 삼분의 일이 의료 과실을 경험하며, 의사의 문제가 이러한 환자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직무 중 문제가 있는 의사는 전염성 또는 치명적 질환을 오진하고, 위험하고 비 전문적 방식으로 수술이나 기타 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영구적 손상 또는 환자의 사망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5. 조사 결과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의사 등, 일부 의사는 엄청난 수의 의료 과실을 저지르고 이에 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과오 또는 과음 상태에서의 치료가 의심되는 동료 의사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없다.

6. 환자 또한 처방약을 과다 처방하고 처방약의 남용을 제한하지 못한 의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보고에 따르면 과다 복용은 치명상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사망 대부분은 처방 약품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나, California에서 중독성이 있고 유해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 전 CURES 등 주가 운영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의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의사는 극히 희박하다.

7. 약물이나 알코올로 문제가 있는 의사나, 중독성 있는 마취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기타 의료 과오를 저지른 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통증, 고통, 신체적 손상, 용모 손상 및 삶의 질 하락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 과실로 죽음에 이른 환자의 남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데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8. 그러나, 1975년, 주의회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으로 250,000달러로 한도를 정해 놓았다. 위험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제한을 두면서, 환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38년에 걸친 환자의 안전 문제로 의사의 자수가 불가하였음이 증명되었다.

9.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50,000달러의 배상 한도는 몰가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배심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 과실의 치명성이나 상처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의료 과오에 의해 피해를 입은 환자 모두의 삶의 질 상실은 물론, 어린 생명의 가치를 250,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환자의 안전은 고통 받았다.

10. 조사에 따르면, 의료 과오 소송은 의료 과오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의료인이 과오에 대하여 보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처하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여, 향후 환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나쁜 사례에 대한 억제 장치로 기능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 3항 목적과 취지.

California 주민이 본 법안을 집행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약물과 알코올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돌발적인 사망이나 중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된 의사에 의한 피해로부터 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한다.

2. 의사가 직무 중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의사 또는 부작용 보고 중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한 의사가 해당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로부터 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한다.

3. 병원이 California 의료국(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약물과 알코올 검사에 대해 확인된 양성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4. 직무 중 알코올이나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의사 또는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 의지가 분명한 의사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5. 의료국에서 직무 중이거나 부작용 보고 중 의사의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사실을 발견하거나 의사가 약물 및 알코올 검사 규정 준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의사를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6. 의사가 환자에게 최초로 II조 또는 III조의 규제 약물을 처방하기 전 주의 규제 약물 활용 검토 및 평가 시스템(CURES)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이미 처방전이 있는 경우, 환자 및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약품을 처방하기 전 합법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7. 의료 과오 소송에서 통증, 고통, 신체적 손상, 용모 손상, 삶의 질 저하 및 사망에 대해 1975년 주의회가 정한 250,000달러의 배상 한도를 몰가 상승을 고려하여 향후 매년 조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책무성을 높이고, 안전 장치로 기능하며 과실 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그 가족 및 타인이 손실을 완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의료 과오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한도를 유지한다.

제 4항 14조(2350.10항으로 시작)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5장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제14조. 내과의사 및 외과의사의 알코올 및 약물로 인한 치료 능력 상실 방지

2350.10. California 의료국(Medical Board of California)은 이 조항을 관리하고, 발효일로부터 일 년 이내에 이 조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규정은 약물 및 알코올 검사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본 조항이나 California 또는 미연방 헌법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0부, 49조에 명시된, 시료 수집, 시료 검사, 약물 및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검증, 시료 보존 및 검사 대상자의 시료 샘플 검사 요청, 기록 관리, 근무 복귀, 및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350.15.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a) "테스트" 또는 "검사"라 함은 의사를 대상으로 직무 중 의사의 치료 능력을 손상하거나 손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부작용 보고(Adverse event)"는 보건안전법 1279.1 항에 규정된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다.

(c) "의료국(Board)"은 California 의료국(Medical Board of California)을 의미한다.

(d) "약물"이라 함은 마리화나 대사물질(marijuana metabolites), 코카인 대사물질(cocaine metabolites), 암페타민(amphetamines), 아편제(opiate metabolites), 및 펜사이클리딘(PCP)을 의미한다. "약물"에는 의사의 약물 사용 방식이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특정 의학 상태에 대하여 전문 자격이 있는 제삼자가 처방한 약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e) "내과의사(Physician)"라 함은 본 장에 따라 내과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과의 수료증(surgeon's certificate)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f) "병원"은 보건안전법 1250항 또는 이후 법령의 정의와 같이 일반적인 급성 환자 치료 병원 및 보건안전법의 1248항의 (b)(1)의 정의와 같이 "외래 치료 기관"을 의미한다.

(g) "확정 양성 검사 결과(Verified positive test result)"라 함은 검사 확인, 의사의 변론 기회 및 의료료 검토 사무관의 검토 및 판정 등 의료국에서 수립한 절차를 통해 검증되었고 의료국이 정한 치료 능력 상실에 대한 기준 농도를 충족하는 양성 검사 결과를 의미한다.

2350.20. 모든 의사는 특정 의사가 직무 중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해 치료 능력이 상실될 수 있거나 상실되었을 수 있거나 부작용 보고 중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는 의사가 해당 관리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의료국에 보고해야 하며, 다른 특정인이 보고할 수도 있다. 법률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로 의료국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한 의사나 기타 특정인은 본 법령의 조항에 따라 보고서의 진술 내용이나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350.25. (a) 의료국이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고자 채택한 규정의 발효일에, 병원은 다음과 같이 의사에 대한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피고용 의사 또는 계약 의사이거나 환자를 입원시킬 권한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 실시.

(2) 부작용 보고 기간 중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담당했거나 환자를 치료했거나 보고 전 24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약품을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 즉시 검사 실시. 검사는 의사의 의무사항으로, 병원에서 최대한 빨리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사가 부작용 보고를 인지한 후 12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허가 정지될 수 있다.

(3) 조사 대상인 의사에 대하여 2350.20항에 따라 조사 의뢰 후 의료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 실시.

(b) 병원은 의사에게 검사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환자나 보험 회사에 검사 비용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2350.30. 병원은 의료국에 확정 양성 검사 결과, 또는 의사의 의도적인 검사 거부 내용을 보고하고, 의료국은 다음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 12조(2220항부터)에 따라 조사 및 집행을 위해 법무부장관 보건 품질 집행부(Attorney General's Health Quality Enforcement Section)로 해당건을 회부한다.

(b) 12조(2220항부터)에 따라 해당 문제와 관련한 의료국의 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의 면허를 일시 정지한다.

(c) 의사 및 의사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각 의료인에 해당 문제와 관련한 의료국의 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의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됨을 통지한다.

2350.35. (a) 조사 및 청문회 후, 의료국이 직무 중 또는 부작용 보고 기간 중 의사의 약물 및 알코올에 의한 치료 능력 상실을 확인하거나 의사가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거나 거부한 사실을 파악한 경우, 의료국은 해당 의사를 징계 처분하고, 이는 면허 인가 조건에 따른 중독 치료, 관찰 기간 중 추가 약물 및 알코올 검사 및 의사 본인이 의료국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무 복귀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까지의 의사 면허 정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의료국이 부작용 보고 기간 중 약물 또는 알코올에 의한 의사의 치료 능력 상실을 판단한 경우, 의료국은 환자에게, 또는 환자 사망 시, 환자의 가족에게, 판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350.40. 의료국은 의사에 대한 연간 수수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의료국 및 법무부장관의 합당한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금액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모든 의사는 면허 인가 또는 면허 갱신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의료국은 본 조항에 따라 조사 및 집행을 따른 비용을 법무부장관실에 정산해 주어야 한다.

제 5항 민법의 3333.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333.2. (a) 업무상 과실에 따라 의료인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통증, 고통, 불편, 신체적 손상, 용모 손상 및 기타 비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하여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어떠한 경우에도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금액은, (c)항에 따른 조정과 같이,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 2015년 1월 1일부터, (b)항에 명시된 배상 금액에 대한 한도는 한도 금액 설정 이래 미국의 노동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척도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후 매년, 본 항에 명시된 배상 금액에 대한 한도를 미국의 노동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척도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재무부는 본 항에 규정된 조정 금액을 산정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에 발표해야 한다.

(d) 본 항의 목적에 따라:

(1) "의료인(Health care provider)"이라 함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조(500항부터)에 따라 면허가 인가 또는 인증되었거나, 정골 치료 법안(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척추 치료 법안(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가 인가되었거나 보건안전법 2조 제2.5장(1440항부터)에 따라 면허가 인가된 개인, 및 보건안전법 2조(1200항부터)에 따라 면허가 인가된 클리닉, 치료소 또는 보건소를 의미한다. "의료인"은 의료인의 법적 대리인도 포함된다.

(2) "업무상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이라 함은 전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인에 의한 과오 또는 누락으로, 이러한 행위가 환자의 상처나 부당한 사망의 예상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단,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며,

면허를 인가한 기관 또는 면허가 인가된 병원에서 규정한 제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e) (c)항에서 조정된 한도 금액은 2015년 1월 1일부로 최종 합의, 판결 또는 중재 제정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소송에서, 비경제적 배상에 대한 지급 판정 시 적용해야 한다.

(f)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6146항에 규정된 변호사 수입료에 대한 제한은 본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에 따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물질적 손해 배상 소송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6항 1714.85항을 민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14.85. 약물 또는 알코올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거나 해당 행위나 누락 후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부 5장의 제14조(2350.10항부터)의 검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내과의 및 외과의의 행위에 따라 의료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리고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보건안전법 11165.4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추정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 7항 11165.4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65.4. (a) 면허를 받은 의료인 및 약사는 해당 환자에게 최초로 II조 또는 III조의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 자신의 관리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된 규제 약물의 해당 법령에 의거, 관리된 전자 이력을 열람 및 참고해야 한다. 환자에게 기준에 II조 또는 III조의 규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합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추가 규제 약물을 처방할 수 없다.

(b) (a)항 규정과 같이 환자의 전자 이력을 참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발급 기관의 징계 처분 사유가 된다. 규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쓰고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발급 기관은 발급 기관의 관할권에 따라 모든 해당 의료인에게 본 항의 요건을 안내해야 한다.

제 8항 수정안.

본 법안은 환자, 그 가족 및 의료 과오 의사로 피해를 입은 기타 당사자가 주의회 각 하원의 삼분의 이 투표로 승인되어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따라, 피해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만 수정할 수 있다.

제 9항 상충 발의안.

본 법안과 의료 과오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제 10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발의안 제47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정부법에 새 조항을 추가하고, 형법전(Penal Code)에 새 조항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의 조항을 수정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유형으로 인쇄되고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발의 법안

안전한 이웃 및 학교법

(THE 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ACT)

제1항 제목.

본 법은 "안전한 이웃 및 학"교법(the 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Act)으로 알려져 있다."

제 2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들은 다음 법안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주민들은 안전한 이웃 및 학교법(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Act)을 제정하여 교도소 비용이 폭력과 심각한 공격성을 중점으로 하고 심각성이 덜하면서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의 대안을 극대화 하며 이러한 법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범죄 예방과 K-12 학교, 희생자 지원 및 정신 건강 및 약물 치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고자 한다. 본 법안을 통해 강간, 살인 및 아동 학대와 같은 중범죄자에 대한 형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제 3항 목적과 취지.

본 법안의 제정 시, California 주민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강간, 살인 및 아동 학대와 같은 중범죄자가 본 법안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을 조성하여, 기금의 25퍼센트를 범죄 예방 및 K-12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주 교육부에 지원하고, 기금의 10퍼센트는 범죄 희생자의 트라우마 극복 서비스에 지원하며, 기금의 65퍼센트는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상습범죄를 줄이는데 지원한다.

(3) 피고가 규정된 폭력이나 심각한 범죄 전과가 없는 한, 좁도독질 및 약물 소지와 같이, 심각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를 규정하도록 한다.

(4) 현재는 경범죄로, 본문의 특정 범죄로 복역중인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재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형을 재 판결하기에 앞서 각 개인의 범죄 이력 및 위험 평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6) 본 법안은 연간 상당한 주의 시정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본 법안으로 K-12 학교의 예방 프로그램, 희생자 지원 서비스, 및 정신 건강과 약물 치료 등, 향후 시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범죄를 줄이며 대중의 안전을 개선하하는 프로그램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제 4항 33장(7599항부터)은 정부법 제1조 7장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장.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조성

7599. (a)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으로 알려진 기금은 이로써 국고에 신설되며, 정부법 13340 항에 관계 없이, 본 장의 목적 이행을 위하여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전용된다.

(b) California주 헌법 제XVI조 8항에 규정된 산정 목적에 맞게,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에 지원된 기금은 일반 기금 수익으로 분류하여 제XIII B조에 따라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7599.1. 기금의 전용.

(a) 2016년 7월 31일 이전 및 이후 각 회계 연도의 7월 31일 이전까지, 재정감독관은 본 법안의 제정 전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6월 30일 마감되는 회계연도 기간 동안 본 장("본 법안")에 추가되는 법안의 이행으로 주에 발생된 절감액을 산출하도록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산정 시, 재정감독관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가장 적절한 추산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산정은

46

47

확정적인 것으로 기본 데이터의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 재정감독관은 회계감사원장에 각 회계연도의 8월 1일까지 산정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b) 2016년 8월 15일 이전, 및 이후 각 회계연도의 8월 15일 전, 회계감사원장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에 (a)항에 따라 산정한 총액을 이전해야 한다.

(c)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의 기금은 본 법안의 목적에 맞게 계속하여 전용해야 한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으로 이전된 기금은 본 법안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주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의 기금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다.

7599.2.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 배분.

(a) 2016년부터 각 회계연도의 8월 15일까지, 회계감사원장은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에 예치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출해야 한다.

(1) 주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이십오 퍼센트 배분하여, 무단결석을 줄이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범죄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및 1학년 - 12학년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공공 기관에 대한 교부금 제도 관리.

(2) California 주 희생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에 십 퍼센트를 배분하여, 정부법 13963.1항에 따라 범죄 희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상장애 극복 센터(trauma recovery centers)에 보조금 지급.

(3) 주와 지역 사회 시정 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에 육십오 퍼센트를 배분하여, 특히, 본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과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상습 범행을 줄이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신 건강 치료, 약물 남용 치료 및 형사 사법 제도의 국민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s) 지원에 목적을 둔 공공 기관에 대한 교부금 제도 관리.

(b) (a)(1)-(3)에 규정된 각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은 매년 관리 비용으로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에서 제공되는 총 기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

(c) 회계감사원장은 이 년마다 (a)(1)-(3)에 규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부금 제도를 심사하여 기금이 본 장의 목적으로만 배분되어 지출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주의회 및 대중에게 보고해야 한다.

(d) 재정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c)항에 규정된 심사와 7599.1항에 규정된 산정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감사원장 및 재정감독관 측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a)항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기에 앞서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Safe Neighborhoods and Schools Fund)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 본 법안에 따라 수립된 기금은 유치원 및 1학년-12학년을 포함한 공립학교 학생, 범죄 희생자, 및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법 제도의 국민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금은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된 기존의 주 또는 지역의 기금을 대신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f) 지역 기관은 본 장에 기술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을 기금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제 5항 459.5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9.5. (a) 459항에 관계없이, 상점절도(shoptlifting)는 정규 영업 시간 동안 상업 시설이 개점한 경우 절도의 목적으로 상업 시설에 진입하는 것으로, 절도하거나 절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의 가치가 구백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 외, 절도의 목적으로 상업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강도(burglary)로 간주한다. 상점 절도는 경범죄로 처벌하되, 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의 경우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는 1170항 (h)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b) (a)항에 정의된 상점절도 행위는 상점절도죄로 기소해야 한다. 상점절도죄로 기소되는 자는 또한 동일 자산에 대해 강도죄나 절도죄로 기소할 수 없다.

제 6항 형법의 47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73. (a) 위조되는 일 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170항 (h)에 따른 구금으로 처벌한다.

(b) (a)항에 관계없이, 수표, 채권, 은행 어음, 지폐,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또는 송금 수표의 가치가 구백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된 위조 범죄자는 일 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하되, 해당 범죄자가 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1170항 (h)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항은 530.5항의 정의와 같이, 위조죄와 신원 도용 모두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7항 형법 476a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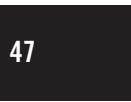
476a. (a) 본인이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서, 또는 기업 책임자로서, 대금 지급을 위한 고의적인 사취 의도로, 은행 또는 예치금, 사람, 회사 또는 기업을 통해 수표, 어음 또는 환을 발행, 인출, 위조, 전달하고, 발행, 인출, 위조, 전달 시점에서, 발행자 또는 인출자 또는 기업이 수표, 어음 또는 환 지불을 위한 자금이나 은행 또는 예치금, 개인, 업체 또는 기업의 신용이 부족하고, 기타 모든 수표, 어음 또는 환 전체가 제출 당시 미수금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와 관련한 명시적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 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170항 (h)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b) 단, 피고가 발행, 인출, 위조 범죄를 저지른 수표, 어음 또는 환의 총액이 사백오십달러(\$450) 구백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범행은 일 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자가 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1170항 (h)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항은 피고가 470, 475 또는 476항 또는 본 항을 한 세 차례 이상 위반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줌도독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경우 피고의 범행이 또한 470, 475 또는 476항 또는 본 항에도 위배되는 경우, 또는 피고가 이전에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특정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주에서의 범행이 470, 475 또는 476항 또는 본 항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가 줌도독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범행이 이 주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한 470, 475 또는 476항 또는 본 항을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자금 또는 신용 부족으로 수표, 어음 또는 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서는 제출, 미지급 및 이의 제기의 근거 문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은행 또는 예치금, 개인, 회사 또는 기업의 자금 또는 신용 부족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 근거로 간주해야 한다.

(d) 본 항에 따라 두 건 이상의 수표, 어음 또는 환과 관련되는 기소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수표, 어음 또는 환 인출자 신원에 대한 일단의 채택 근거로 간주해야 한다.

(1) 수취인이 인출자로부터 수표, 어음 또는 환을 수취할 경우, 인출자로부터 인출자의 성명 및 거주지, 회사 또는 우편물 발송 주소, 유효한 운전면허 번호 또는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식별 카드 번호, 및 인출자의 자택 또는 근무지 전화 번호나 근무지 등의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수표, 어음 또는 환에 직접 기록하거나 수취인이 파일 상에 보관하여 번호나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식별함으로써 수표, 어음 또는 환에 인용할 수 있다.

(2) 수표, 어음 또는 환을 수취하는 당사자는 인출자의 서명이나 이서 내용을 목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수취 시 수표, 어음 또는 환에 서명하게 된다.

(e) 본문에 사용된 "신용(credit)"이라는 단어는 수표, 어음 또는 환 지급 시 은행 또는 예치금, 개인, 업체 또는 기업과의 약정 또는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 이전 단락 또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항의 나머지 사항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g) 보안관 사무소, 경찰서,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은 476항 또는 본 항의 위배 사실에 대한 조사 시 피고로부터 해당 기관에 신고된 수표에 관한 조사, 수집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h) 수수료의 금액은 범행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은행 수수료 금액 및 각 위조 수표에 대해 이십오 달러(\$25)를 초과할 수 없다. 보안관 사무소, 경찰서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본 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은행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피해자에게 부과되었을 수 있는 은행 수수료 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과된 은행 수수료에 대한 배상 금액은 수표 당 십 달러(\$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항 490.2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0.2. (a) 487항 또는 중절도에 관한 기타 법률 조항에 관계없이, 재산을 절도한 경우, 금전, 노동,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의 가치가 구백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줌도독으로 간주하고 경범죄로 처벌하되, 해당 범죄자가 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1170항 (h)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 본 항은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는 절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 9항 형법의 49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96. (a) 절도 또는 갈취의 방식으로 절도 또는 취득한 재산을 절도 또는 갈취한 재산임을 알고도, 매입 또는 입수하거나 소유주의 특정 재산을 절도 또는 갈취한 재산임을 알고도 은폐, 판매, 또는 보유하거나 이에 동조한 모든 대상은 일 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1170항 (h)에 따른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 지방 검사 또는 대배심관의 판결에 따라 이 법안이 해당 사건에 따라, 사법관, 지방 검사 또는 대배심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재산 가치가 구백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서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은 경범죄로 취급하여, 해당 범죄자가 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전과가 없는 경우, 일 년을 초과하지 않은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실제 기본적인 절도는 본 항에 따라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 단, 본 항에 따라 그리고 동일 재산에 대한 절도죄 모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b)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1661항에 규정된 모든 교환 시장 업자, 및 주 업종이 상품 또는 개인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집하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대리인, 직원 또는 특정인의 대리인이, 절도나 갈취의 방식으로 절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구백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는 물품을 매입하거나 입수한 경우, 개인,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가 재산을 매입 또는 취득한 출처가 합법적인 판매 또는 공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충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일 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170항 (h)에 따른 구금으로 처벌한다.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1661항에 규정된 모든 교환 시장 업자, 및 주 업종이 상품 또는 개인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집하는 모든 개인 또는 모든 대리인, 직원 또는 특정인의 대리인이, 절도나 갈취의 방식으로 절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구백 오십 달러(\$950) 이하의 물품을 매입하거나 입수한 경우, 개인,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가 재산을 매입 또는 취득한 출처가 합법적인 판매 또는 공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충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

(c) (a) 또는 (b)항의 위반으로 신체적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원고의 해당 조건에 따른 실제 피해 금액, 소송 비용 및 합당한 변호사 선임료의 세 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 664항에 관계없이, 본 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혐의 진술에서 경범죄로 명시된 범행을 제외하고, 일 년 이내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170항 (h)에 따른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10항 형법의 66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66. (a) 490항에 관계없이, 줌도독질, 중절도죄, 368항 (d) 또는 (e)에 따른 범죄, 자동차법 10851항에 따른 자동차 절도, 496항의 강도, 자동차 탈취, 은행강도, 또는 죄중에 대한 삼 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처벌 기관에서 복역하였거나 해당 범행에 대한 보호 관찰 조건으로 이곳에 구금된 적이 있는 모든 대상자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170항의 (h)에 따른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b) (a) 490항에 관계없이, (b) (t) 에, 줌도독질, 중절도죄, 368항 (d) 또는 (e)에 따른 범죄, 자동차법 10851항에 따른 자동차 절도, 496항의 강도, 자동차 탈취, 은행강도, 또는 죄중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처벌 기관에서 복역하였거나 해당 범행에 대한 보호 관찰 조건으로 이곳에 구금된 적이 있으며 이후 줌도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대상자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주립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t) (b) 본 항 (a)항은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에 따라 신고를 요하고, 667.5항의 (c) 또는 1192.7항의 (c) 667항 (e)(2)(C)(iv)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전의 폭력 또는 흉악 범죄 전과가 있거나 368항 (d) 또는 (e)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2) (c) 본 항 항은 667항 또는 1170.12항의 (b) - (i)에 따른 기소 또는 처벌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11항 보건안전법의 1135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50. (a) 본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 11054항 (b), 또는 (c), (e) 또는 (f)(1)에 명시되어 있거나 11054항 (d)(14) (15) 또는 (20)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 약물 또는 11055항 (b) 또는 (c)에 명시되어 있거나 11056항 (h)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 약물 (2) 해당 주에서 의료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발병 전문가 또는 수의사의 서면 처방에 따른 경우가 아닌 경우, 별표 III, IV, 또는 V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규제 약물을 소지한 자는 해당 범죄자가 형법 제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형법 제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법 1170항 (h)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b) 본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1054항 (c)에 규정된 규제 물질을 소지한 모든 자는 형법 제1170항 (h)에 따라 일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c) (b) 본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a) 또는 (b)에 규정된 규제 물질을 소지할 때마다, 판사는 (a) 또는 (b)에 따라 규정된 처벌 외에도, 칠십 달러(\$7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 수익은 형법 제1463.23항에 따라 사용한다. 단, 법정은 피고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야 하고, 피고는 본 항에 따라 허용된 벌금의 지급 무능을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d) (c) 사법부 이익에 부응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따른 중범죄 판결에 따라 법정이 보호관찰을 인정할 때마다,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보호관찰 조건 외에도, 다음의 보호관찰 조건을 명령해야 한다.

- (1) 본 항에 의거한 최초의 범행인 경우, 최소 천 달러(\$1,000)의 벌금 또는 사회 봉사.
- (2) 본 항에 의거한 재범 또는 연속 범행인 경우, 최소 이천 달러(\$2,000)의 벌금 또는 사회 봉사.
- (3) 피고가 (1) 및 (2)에 규정된 최소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금 대신 사회 봉사를 명령해야 한다.

제 12항 보건안전법의 11357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57. (a)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초를 소지한 자는 일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과 구금으로 처벌하되, 또는 형법 제1170항 (h)에 따라 구금으로 처벌하거나 해당 범죄자가 형법 제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형법 제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법 1170항 (h)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b)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초 이외 28.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자는 법률 위반으로, 백 달러 이하(\$100)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c)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초 이외 28.5그램을 초과하는 마리화나를 소지한 자는, 육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해야 한다.

(d)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또는 1학년 - 12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 대마초 이외 28.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경범죄를 적용하고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두 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

(e)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또는 1학년 - 12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 대마초 이외 28.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모든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경범죄를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1) 초범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백 오십 달러(\$250) 이하의 벌금
- (2) 재범이거나 연속 범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내의 소년원, 목장, 캠프, 산림 캠프 또는 안전한 청소년 주택 참가, 또는 둘 다.

제 13항 보건안전법의 11377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77. (a) 법률상 승인된 경우와 11375항 (b),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9장의 7조(4211항부터)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 III, IV 또는 V조에 분류되어 있고, 마약이 아니며, (2) (d)항 (13), (14), (15), 및 (20)을 제외하고, 11054항의 (d)에 명시되어 있고, (3) 11056항 (c)(11)에 명시되어 있으며, (4) 11054항 (f)(2)(3)에 명시되어 있거나 (5) 11055항 (d), (e), 또는 (f)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소지한 자는, 해당 주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발병 전문가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 아닌 한, 형법 제1170항 (h)에 따라 일년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하되, 해당 범죄자가 형법 제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형법 제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법 1170항 (h)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b) (1) 11056항 (f)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불법 소지하여 (a)항을 위반하고 11056항 (f)에 규정된 규제 약물 관련 위반 전과가 없는 자는 경범죄로 처리한다.

(2) 11056항 (g)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불법 소지하여 (a)항을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처리한다.

(3) 11055항 (d)(7) 또는 (8)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불법 소지하여 (a)항을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처리한다.

(4) 11057항 (f)(8)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불법 소지하여 (a)항을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처리한다.

(c) (b) (b)에 따라 부과한 벌금 이외에, 판사는 (a)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칠십 달러(\$7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 수익은 형법 제1463.23항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단, 법정은 피고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야 하고, 피고는 본 항에 따라 허용된 벌금의 지급 무능을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 14항 1170.18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70.18. (a) 본 법안이 범행 당시 시행되었다면, 본 항에 추가된 법안("본 법안")에 따라 경범죄로 처리되었을 수 있는 자가 재판이나 탄원에 관계없이, 현재 중죄 혐의로 복역 중인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소에서 형의 철회를 청원하여 보건안전법 11350, 11357, 또는 11377항 또는 형법 제459.5, 473,

476a, 490.2, 496, 또는 666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항은 본 법안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에 따른다.

(b) (a)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면, 법정은 청원이 (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청원자가 (a)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법정이 재량에 따라 청원자 재심 시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청원자의 중죄 형량은 철회되고 보건의안법 11350, 11357, 또는 11377항 또는 형법 제459.5, 473, 476a, 490.2, 496, 또는 666항에 따라 경범죄로 재심되며, 해당 항은 본 법안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에 따른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경우, 법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유형 등, 청원자의 범죄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전 교도소 복역 기간 및 범죄 장소의 거리.

(2) 청원자의 투옥 중 징계 기록 및 갱생 활동 기록.

(3) 법정이 재량권 내에서, 형을 새로 선고할 경우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기타 증거.

(c) 본 법령 전체에 인용된 바와 같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라 함은 청원자가 667항 (e)(2)(C)(iv)의 의미에 따라 새로운 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d) (b)에 따라 재심하는 대상자는 법정의 재량에 따라 재심 명령의 일부로, 가석방을 해제하지 않는 한 가석방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하여, 형량 만료에 따라 일 년간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해당 당사자는 가석방을 철회하고 구류를 부과하기 위하여, 교정 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및 가석방자가 풀려났거나 거주하며, 감독 위반 행위가 발생된 카운티 관할 법정이 감독하는 3000.08항 가석방 대상이 된다.

(e)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항에 따른 재심으로 원래 형량보다 긴 형량을 판결할 수는 없다.

(f) 본 법안이 범행 당시 시행되었다면, 본 항에 따라 경범죄로 처리되었을 수 있는 자가 재판이나 탄원에 관계없이, 중죄 혐의로 형량을 마친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소에 중죄 판결을 경범죄로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g) 이러한 신청이 (f)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법정은 이러한 중죄 범행을 경범죄로 변경해야 한다.

(h) 신청자의 요청이 없는 한, (f)에 따른 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기 위한 심의는 불필요하다.

(i) 본 항의 조항은 667항 (e)(2)(C)(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 본 항에 따른 청원이나 신청은 이 항을 추가한 법안 발효일로부터 삼 년 이내 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이후 날짜에 이루어져야 한다.

(k) (b)항에 따라 철회 및 재심하여 (g)에 따라 경범죄로 지정된 중죄 판결은 모든 측면에서 경범죄로 간주하되, 이러한 재심이 당사자로 하여금 화기를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관리하도록 허용하거나 6부 4조 9항의 2장(29800항부터)에 따른 유죄판결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 원래 청원자에게 구형한 법정이 없는 경우, 주재 판사가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또 다른 규칙의 판결을 지정해야 한다.

(m) 본 항의 어떠한 부분도 청원자나 신청자에게 부여된 권리나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n) 본 법안 및 관련 항의 어떠한 부분도 본 법안의 이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축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o) 본 법안에 따라 명령한 재심은 California주 헌법(Marsy의 법) 제I조 28항 (b)(7)에 따라 "유죄판결 후 석방 진행(post-conviction release proceeding)"을 구성한다.

제 15항 수정안.

본 법안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법안의 조항은 주의회 각 하원 의원의 삼분의 이 투표로 수정하고 그 수정안이 본 법안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는 한 주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의회는 본 법안에 기술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고자 할 경우 다수결로 조항을 수정, 추가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 16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조항이나 일부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 시 어떠한 사유로 무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 조항, 또는 조항의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본 법안의 조항을 분할할 수 있다.

제 17항 상충 발의안.

(a) 본 법안은 특정 비중대, 비폭력 범죄와 관련한 처벌 내용을 변경한다. 본 법안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단, 본 법안과 농축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조항이 포함된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선거 표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유권자의 의도는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은 법안에 관계 없이, 다른 법안(들)의 농축 대마초와 관련된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또한 본 법안의 기타 모든 적용 및 조항과 다른 법안(들)에 대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다른 법안(들)이 본 법안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 한 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법에 따라 동일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향후 그 상충 투표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이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 18항 자율적 수립.

본 법안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발의안 제48호

2013-2014 정기 회기의 주 하원 법안 277에 의해 발의된 본 법안(2013년 제정법, 51장)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의 9항에 따라 California 주민에게 주민 투표로 제안된 것이다.

본 발의안에서는 정부법에 새로운 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조항이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항 12012.59항을 정부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12.59. (a) (1) 부족-주정부 도박 약정(tribal-state gaming compact)은 1988년 연방 인디언 도박 규제법(federal Indian Gaming Regulatory Act)(18 U.S.C. Secs. 1166 - 1168, 포함, 및 25 U.S.C. Sec. 2701 외)에 따라 California 주와 North Fork Rancheria Band of Mono Indians간에 체결된 것으로, 2012년 8월 31일 이행되어 이로써 비준된다.

(2) 부족-주정부 도박 약정(tribal-state gaming compact)은 1988년 연방 인디언 도박 규제법(federal Indian Gaming Regulatory Act) (18 U.S.C. Secs. 1166 - 1168, 포함, 및 25 U.S.C. Sec. 2701 외)에

47

48

따라 California 주와 Wiyot족 간에 체결된 것으로, 2013년 3월 20일 이행되어 이로써 비준된다.

(b) (1) 종족의 자주권을 존중하여, 다음 중 어떠한 사항도 California 주 환경의 질에 관한 법(공공자원법 제13부(21000항부터))의 목적에 따른 사업으로 간주할 수 없다.

(A) 본 항에서 비준된 부족-주정부 게임 약정에 대한 수정안 이행.

(B) 본 항에서 비준된 부족-주정부 게임 약정의 이행.

(C) 본 항에서 비준된 부족-주정부 게임 약정의 명시적 권한 또는 명시적으로 인용된 바에 따라 협의된 종족과 카운티 또는 도시 정부 간 약정 이행.

(D) 본 항에서 비준된 부족-주정부 게임 약정의 명시적 권한 또는 명시적으로 인용된 바에 따라 협의된 종족과 교통부 간 약정 이행.

(E) 본 항에서 비준된 부족-주정부 게임 약정 조건 준수 시 인디안 보호 구역에 대한 영향.

(F) 63048.6항 (a)에 정의된 바와 같은 약정 자산의 판매 또는 63048.65항에 따라 수립된 특수한 목적의 신탁 신설.

(2) 본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조항은 California 주 환경의 질에 관한 법 요건에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 또는 교통부를 배제하지 않는다.